

부산직할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안

의안번호	125
------	-----

제출년월일 : 92. 6.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91. 9. 7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462호) 및 91. 9. 9 동법 시행규칙(총리령 제392호)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종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시행되던 부산직할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와 분리하여 우리구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분뇨의 수집운반 : 구청장은 관할 구역내의 분뇨를 효율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 운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대행 : 구청장은 관할 구역내의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를 하기 위하여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다.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안 제8조)

분뇨수집·운반수수료 18ℓ당 267원

정화조 청소 수수료 0.75㎡당 14,725원(초과금액, 매 0.1㎡ 초과시 1,040원씩 추가)

라. 분뇨관련 영업허가 : 분뇨관련 영업허가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구청장이 직할시장의 승인을 받아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구청장이 신문공고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일반에게 알리고 영업자 선정은 공개추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함.

3. 관계법령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부산직할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분뇨의 수집·운반)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분뇨(정화조 오니를 제외한다)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 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일정에 불구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 3 조(정화조등의 청소통지)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내에 설치된 정화조·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이하 “정화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및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정화조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 이행 통지 전에 청소 이행기한을 안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정화조등의 청소 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지역별 또는 정화조 용량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

제 4 조(정화조등의 내부청소) ①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1. 정상 가동되고 있는 정화시설의 경우에는 오니 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 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한다.

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정화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크림이 생성된 경우에는 정화시설 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종오니를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②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화조 내부청소를 할 경우에는 부패조의 스크림 및 침전 오니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100에 상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③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화시설이 정상가동 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통지한 청소이행 기한 10일 이전에 채취한 방류수를 국·공립 연구 기관 또는 수질환경 보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 대행자가 측정한 수질시험 성적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청소 이행 의무 여부를 판단하여 내부청소를 보류할 수 있다.

제 5 조(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를 법 제35조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업자는 별표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과 정화조등의 청소를 대행업자가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 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 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55조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분뇨 관련 영업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55조 제11호 또는 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회 이상 처분을 받은 자
3. 법 제58조 제1항 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3회 이상 처분을 받은 자
4. 기타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정화조 청소의 효율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코자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3월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계

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한다.

제 6 조(비정상 가동 정화조등에 대한 신고) ① 대행업자는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상 가동을 하지 않은 정화조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법 제9조, 제10조, 제14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의 설치 신고, 내부청소, 시설의 개선 명령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 7 조(정화조등 청소자료의 전산관리) ① 구청장은 정화조등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 기한, 시설 용량, 시설 소유자등의 내용을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

② 입력된 전산자료의 내용 변동이 발생하였거나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청소실적을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 8 조(수수료 부과·징수) ① 분뇨의 수집·운반과 정화조등의 내부청소 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과 정화조등의 청소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부터 수집 또는 청소후 즉시 징수 한다.

제 9 조(수수료의 분할 징수) ① 구청장은 정화조등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합리적인 수수료 부담과 내부청소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통합 공과금에 포함시켜 매월 분할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분할징수하였을 때에는 매월 징수한 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대행업자가 청소한 양에 따라 익월 15일까지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가산금)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1조(분뇨처리 수수료 부담) ① 분뇨(정화조 오니를 포함한다) 처리 수수료는 변소 소유자 및 정화조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 처리 수수료는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내부청소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금은 부산직할시분뇨처리에따른수수료징수조례 제2조 제2

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분뇨 처리 수수료를 대행징수 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수수료의 강제 징수)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가산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4조(수수료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 대상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자.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자는 주소, 성명, 분뇨량등에 대한 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5조(분뇨관련 영업허가)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관련 영업자의 정수를 정할 수 있으며, 분뇨 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구역내에 두어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 관련 영업허가의 정수를 조정코자 할 때에는 신문 공고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 영업자의 선정은 공개 추첨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할구역 내의 현재 및 장래의 분뇨 또는 정화조 청소의 발생량과 허가받은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 수집운반 능력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허가기간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 또는 정화조등 청소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인력, 장비, 기타설비등을 추가 확보토록 명할 수 있다.

제16조(가축사육 제한) ① 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피정동 전역 및 감천 1동에 대하여 가축

사육을 금지한다.

② 제1항의 가축사육 금지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법 제24조 제4항에서 규정한 신고대상 이하의 소규모 가축사육을 하고자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시설규모등을 판단 축산폐수정화 시설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가축을 사육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축사의 이전 및 위해의 제거를 명할 수 있으며, 이전의 경우에는 6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

제17조(과태료 부과) ① 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대상은 별표 3과 같다.

②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위반 일시, 위반내용, 과태료 금액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 납부기간) ①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 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납부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주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9조(처분취소 및 변경) 구청장이 부과 처분한 과태료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피 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구청장은 이를 검토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제기에 대한 검토 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제21조(과태료 수납부등 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업무의 위임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또는 공중변소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관리 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시설 장비의 노후 기타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행정위탁) 구청장은 인접한 시, 군, 구의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분뇨 또는 정화조의 청소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 협의에 따라 수집 운반 또는 청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영업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및 부산직할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분뇨 관련 영업허가를 받은자와 허가기간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는 것으로 본다.

② 제15조 규정에 의한 분뇨 관련 영업허가의 정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본다.

제 3 조(대행계약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조례 규정에 의하여 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5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4 조(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분노관련 영업 대행 계약 기준(제5조 제1항 관련)

구 분	자 본 금	인 력	차 량 및 장 비	차 고
분노수집 운 반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 1억원 이상 • 개인 : 1억5천만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원 : 2인 이상 • 수거원 : 2인 이상 • 사무원 : 2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량합계 : 10,000ℓ 이상 흡인식 차량 소유 (탈취시설 부착) • 신고용 전화 : 2대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차고 면적(대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톤 미만 : 13m² - 5톤이상 10톤미만 : 26m² - 10톤이상 : 36m²
정 화 조 청 소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 1억원 이상 • 개인 : 1억5천만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분야 환경기사, 위생사, 오물처리사 또는 고등학교 졸업이상자로서 당해 업종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인 이상 • 운전원 : 2인 이상 • 수거원 : 2인 이상 • 사무원 : 2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량합계 : 15,000ℓ 이상 흡인식 차량 소유 (탈취시설 부착) • 신고용 전화 : 2대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차고 면적(대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톤 미만 : 13m² - 5톤이상 10톤미만 : 26m² - 10톤이상 : 36m²

※ 차고는 자기차고 또는 임대도 가함

〈별표 2〉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제8조 제1항 관련)

구 분	부 과 기 준	수 수 료	적 용 기 준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18ℓ	267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직할시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비 포함 금액임 •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 요금계산시 10원미만은 버린다.
정화조청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금액 : 0.75㎡당 (단, 0.75㎡미만은 0.75㎡로 본다) • 초과금액 : 0.1㎡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725원 1,04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직할시분뇨처리에따른수수료징수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비 포함 금액임 • 청소된 오니(오수를 포함한다)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 요금 계산시 100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3〉

과태료 부과 기준(제17조 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이상 일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 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당해 위반 행위가 있던달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다.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 라.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후
1. 오수정화시설, 정화조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위반한 자(법 제5조)			
가. 오수정화시설			
(1) 1일 처리용량이 100m ³ 미만인 오수정화시설			
(가) 방류수 수질기준 50%미만을 초과한 경우	10	20	30
(나) 방류수 수질기준 50%이상 100% 미만을 초과한 경우	30	40	50
(다) 방류수 수질기준 100%이상 200% 미만을 초과한 경우	50	60	70
(라) 방류수 수질기준 200%이상을 초과한 경우	70	80	100
(2) 1일 처리용량이 100m ³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가) 방류수 수질기준 50%미만을 초과한 경우	20	30	40
(나) 방류수 수질기준 50%이상 100% 미만을 초과한 경우	40	50	60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후
(다) 방류수 수질기준 100%이상 200% 미만을 초과한 경우	60	70	80
(라) 방류수 수질기준 200% 이상을 초과한 경우	80	90	100
나. 정화조			
(1) 처리용량 10m ³ 미만인 정화조의 경우	10	20	30
(2) 처리용량 10m ³ 이상인 정화조의 경우	30	40	50
2.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9조 제2항 또는 제10조 제2항)			
가. 오수정화시설인 경우	20	50	100
나. 정화조의 경우	10	20	50
3.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을 사용한 자(법 제11조 또는 제26조)			
가. 준공검사를 받기전에 사용한 자			
(1) 정화조, 축산폐수 정화시설(신고대상)의 경우	20	20	20
(2)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30	30	30
나. 준공검사에 불합격판정을 받고도 계속 사용한 경우			
(1)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의 경우	50	50	50
(2) 오수정화 시설의 경우	80	80	80
4.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당해 시설의 설계, 시공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맡긴자(법 제13조 제1항 및 제3항, 제22조 또는 제27조)			
가.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 대상)의 경우	50	50	50
나.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80	80	80
5.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 관리한 자(법 제14조 제2항 또는 제28조 제2항)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후
가. 방류수 수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처리용량 200m ³ 이상 또는 1일처리용량 200m ³ 이상인 오수정화시설은 반기별 1회이상	10	20	50
(2) 1일 처리용량 5m ³ 이상인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 상)은 연1회 이상	10	20	50
나.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처리용량이 10m ³ 미만인 정화조, 축산폐수 정화시설 (신고대상)	10	30	50
(2) 처리용량 10m ³ 이상인 정화조,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30	50	80
다. 처리대상인원 500인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 조의 방류수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라. 악취가 발산되거나 해충이 외부로 번식, 발생이 되는 경우	10	20	50
6. 간이오수정화조의 설치명령을 위반하여 당해 시설을 설 치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 제1항)	100	100	100
7.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법 제2조 제4항)	30	50	100
8. 축산폐수 정화시설(신고대상)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한자로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위반한 자(법 제5조)			
(1) 방류수수질기준 20% 미만을 초과한 경우	10	20	30
(2) 방류수수질기준 20% 이상 50% 미만을 초과한 경 우	30	40	50
(3) 방류수수질기준 50% 이상 100% 미만을 초과한 경 우	50	60	70
(4) 방류수수질기준 100% 이상을 초과한 경우	70	80	100
9. 영업구역, 기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분뇨관련 영 업자(법 제35조 제4항)			
가. 영업구역 또는 영업기한을 위반한 경우	50	80	100
나. 적기에 분뇨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천제지변 등 부 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	10	20	50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후
10.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분뇨관련 영업자(법 제35조 제6항)	30	50	100
11. 기술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42조 제2항)	30	50	100
12.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42조 제3항)	20	40	100
13. 기술관리인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법 제43조)	50	80	100
14. 장부를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자(법 제44조)	30	50	100
15. 휴업, 폐업등의 신고를 아니한 분뇨관련영업자(법 제46조 제1항)	30	50	100
16.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법 제46조 제1항)	30	50	100